

2008 테마조사

EU 농식품 관련 제도

2008. 9

농수산물유통공사

본 자료집은 EU-27에서 현재 운용중인 식품 관련제도의 전체를 개관하고 있다. 업데이트된 분야는 다음과 같다. 라벨표시요건(알레르기 항원, 영양 및 보건 관련 문구), 포장(포장 단위), 살충제, 오염물질, 특정 기준(유전자변형 식품, 신규 식품, 와인과 스피릿 음료, 유기농 식품, 쇠고기 라벨, 계란 표시, 기타) 및 각 국가의 대외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입 절차에 관한 유럽위원회의 법안

목 차

제1장 식품법	1
제2장 라벨링 요건	5
A. 일반적 요건	5
필수 정보	5
키니네와 카페인	8
피토스테롤과 피토스테놀	8
정량적 성분표시 (QUID)	9
언어 요건	10
접착식 라벨	11
샘플	12
유전자 변형식품 및 신규 식품의 라벨링	12
B. 의료/건강/영양학적 표시	12
영양학적 라벨링에 관한 요건	14
C. 제품별 라벨링	15
제3장 포장 및 용기 요건	16
A. 상자 크기	16
B. 포장지 폐기물 관리	16
C. 식품접촉 물질	17
제4장 식품 첨가제에 관한 규정	18
처리 촉매제	20
향신료	20

제5장 살충제와 오염 물질	21
살충제	21
오염 물질	23
최대 레벨	23
식품함유 최대허용치에 대한 관리	26
동물과 동물 제품에 함유된 잔여물	26
제6장 기타 규정과 요건	27
A. 제품 검사 및 등록	27
B. 인증 및 서류 준비 요건	28
제7장 기타, 특수 기준	29
A. 유전자변형식품 (GMO)	29
B. 신규식품	30
C. 강화식품	32
D. 식이요법 관련 식품	32
E. 와인, 맥주 및 기타 주류	33
F. 유기농식품	35
G. 수직적 법규	36
H. 동물제품	37
I. 냉동식품	39
J. 방사선 검사 식품	39
K. 과일과 채소	40
L. 해산물	41
제8장 저작권 및 상표법	42
상표	42
지리적 표시제도	42

제9장 수입 절차	43
-----------------	----

〈부록〉

1. 법규관련 유관기관 연락처	49
2. 제반 법규 확인	50
3. EU 발의안	51
4. 웹사이트 및 안내문	52

제1장 식품법

과거, 유럽경제연합(EEC)으로 알려졌던 유럽연합(EU)은 1957년 3월 25일 로마협정에 의해 결성되었다. 수 차례의 확장을 거듭하여 유럽연합은 세계에서 가장 큰 다국가 무역세력이 되었다. 2007년 1월 1일부로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27개국이며, 인구는 대략 4억 9천만 명에 달한다.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다음과 같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 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은 가공식품에 관련된 유럽연합의 법과 규정을 포함하여 유럽연합이 당사자가 되는 전체 조약 및 계약에 관련된 모든 유럽연합의 법과 의무 사항을 수용한다.

관세동맹으로 결성되었기 때문에 기존 회원국의 법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번거롭고 오래된 과정이 여전히 진행중에 있다. 전 유럽연합에 걸쳐 식품법과 규정의 대다수가 조정되었지만, 단일 시장으로서의 유럽연합은 여전히 "미완성"이다. 유럽 전역에 적용되는 법규가 불완전하거나 부재하는 경우, 각 회원국의 법이 적용되어 서로 다른 회원국의 서로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유럽연합 회원국에 주재하는 농무관이 작성한 FAIRS 보고서는 회원국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훌륭한 자료원이다.

(<http://useu.usmission.gov/agri/fairs.html>)

단일시장 개념의 주된 원칙은 유럽연합 내에서 생산되거나 제3의 국가에서 수입된 모든 식품이 요건에 충족하기만 한다면 유럽연합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특정 지시 사항들은 어떤 국가에서 수입용 식품이 보건 관련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EU 농식품 관련 제도

상황을 각 회원국에서 허용하고 있다. 모든 측면에서 통일된 법규를 적용할 수 있을 경우에만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라벨 관련 지시 사항은 준수하지만 통일된 규정이 이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 건강 관련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식품이 있을 수 있다.

유럽연합의 통일된 규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 상품은 기존 회원국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유럽연합의 법규는 지시 사항과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EU-27에서 사용되는 23개의 공식 언어로 반드시 번역되어야 한다. 지시 사항은 달성해야 하는 결과를 정의한 것이지만 각 회원국이 이 지시 사항을 자국의 법으로 해석 적용하는 데 사용되는 형태와 방법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채택 후 2~3년 내) 규정은 정해진 일자에 모든 회원국에서 자동적으로 전체가 발효되어 구속력을 갖게 되며, 유럽연합 법규의 개정은 보통 신규 및 독립적인 지시 사항과 규정으로 공표되기 때문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모든 개정 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본 자료집에서 인용되는 법규에는 차후 개정된 모든 조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침서에서 인용된 유럽연합의 법규는 웹사이트 주소를 안내하였으며, Eurlax 웹사이트(<http://eur-lex.europa.eu/en/index.htm>)에서 무료로 유럽 연합법을 참조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식품 관련법을 통일시킬 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하나는 모든 식품류에 공통된 속성(첨가물, 라벨링, 위생 등)을 포괄하는 "수평적" 법규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상품(예를 들어 코코아와 초콜릿, 설탕, 꿀, 과일 주스, 과일 잼, 새로운 음식 등)에 대한 "수직적" 법규이다.

1990년대 후반 광우병 위기 및 다른 식품 스캔들의 여파로, 유럽연합은 새로운 식품 정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제도적 이행 계획을 제시하는 식품 안전에 관한 보고서를 2000년 1월에 발간하였다. 유럽연합은

추적성을 기본 개념으로 하여 식품 및 유통 체인의 전 부문인 "농장에서 식탁까지"를 포괄하는 접근법을 개발하였으며, 2000년 2월 예방 원칙에 관한 위원회 간담에서 기술된 "예방 원칙"의 적용 또한, 유럽연합의 접근법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새로운 접근법의 핵심 구성 요소는 유럽연합의 식품법의 일반적인 원칙과 요건을 규정하는 구조의 확립, 입법기관에게 과학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독립 기구인 유럽식품안전기구(EFSA)의 설립, 기존 위생법규 대부분을 정밀하게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 특정 식품 및 공급 안전 법규의 개발과 통합된 식품 관리를 위한 형태의 설립이었다. 일반적인 식품법, 식품 및 공급 관리, 식품 위생과 공급 위생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유럽연합의 새로운 식품안전시스템을 위한 토대가 되는 규정이다. 기존 유럽연합의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 제정된 규정을 통해 새로운 체계적인 규정에 포함된 원칙이 실행된다. 유럽 연합의 식품 안전 접근법에 관한 정보는 <http://useu.usmission.gov/agri/foodsafes.html>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유럽연합의 정치적 구조에는 위원회(영구 관료 기관), 회원국 대표 평의회와 유럽의회가 있으며, 법규를 제정하고 통과시키는 데는 이 세기구가 모두 참여하게 된다. 유럽연합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USDA 웹사이트 <http://useu.usmission.gov/agri/institutions.html>와 유럽 위원회 웹사이트 <http://europa.eu/index-en.htm>를 참조하고 식품 안전에 관한 과학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유럽식품안전기구(<http://www.efsa.europa.eu>)에서 담당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식품 관련 법규는 회원국의 관계자가 제정하는데, 회원국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은 유럽위원회 관계자의 몫이다. 유럽위원회는 유럽연합의 지시 사항과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회원국에 대해 유럽고등법원에서 법적 절차를 개시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수출업체는 유럽연합의 일관된 법규를 적용할 때 회원국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며, 규칙 시행에 관한 일관된 지침이

EU 농식품 관련 제도

부재하거나 유럽연합의 규칙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전환 기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이라고 불리는 일시적인 포기나 면제 때문일 수도 있다. 유럽연합의 통일된 법규를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으며, 유럽연합 차원에서 자세하게 규정되지 않은 특정 측면, 예를 들어 회원국 사이 접착식 라벨의 수용 여부 등이 회원국에서 다르게 처리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검사 수수료, 등록비, 식품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제품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데 필요한 시간 등이 크게 다르다.

유럽연합 식품 수입 규칙에 관한 최신 정보와 유럽연합 수입 관세 및 할당량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는 USDA 웹사이트인 <http://useu.usmission.gov/agri/usda.html>를 참조하고 이 웹사이트에서 다른 유용한 정보도 많이 다루고 있다.

➤ **주의사항** : 정육, 육가공품, 사육육 및 야생육, 주금류, 우유와 유가공품, 해산물, 소 배아 및 정액, 돼지와 말의 정액, 젤라틴과 동물의 창자를 미국에서 유럽연합으로 수입하는 경우 유럽연합이 승인한 미국 내 기관에서 생산/제조된 것만이 가능하다.

제2장 라벨링 요건

<http://useu.usmission.gov/agri/label.html>

A. 일반적 요건

미국의 표준 라벨은 유럽연합의 라벨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유럽 연합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라벨링, 표시 및 광고는 유럽 의회 및 평의회 지시 사항 2000/13/EC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될 식품 뿐 아니라 레스토랑, 병원, 기타 대형 요식업체에 판매되는 식품에도 적용된다. 제7장은 유전자 변형 식품과 신규 식품을 포함한 특정 제품에 대한 라벨링 요건을 다루고 있다.

필수 정보

- 판매 제품의 명칭
- 중량이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표시된 성분 리스트 농축액을 재구성할 때 추가되는 물과 특별 규칙에서 다루지는 치즈는 예외로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성분은 라벨에 따로 언급해 줄 필요가 있다. 유전자변형식품, 포장 가스, 감미료, 아스파르테임 및 폴리올, 키니네, 카페인, 식물 스테롤과 피토스테놀 및 감초 등
- 알레르기 항원 : 식품 알레르기 항원 라벨링 규칙은 지시 사항 2003/89/EC에서 도입되어 2005년 11월 25일에 발효되었다. 이 지시 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은 12개 그룹의 잠재적 알레르기 항원성분을 식품 라벨에 표시하여야 하 , , , , , , 유제품(락토오스 포함), 견과 및 견과 제품, 참깨, 1 킬로그램이나 1 리터 당 최소 10mg이 농도의 소금, 설탕, 겨자. 2008년 12월 23일에 발효될 지시 사항 2006/142/EC에는 알레르기 항원 성분 리스트에 "루핀과 루핀

가공품", "연체동물과 연체동물 가공품"이 추가된다. 알레르기 항원 식품의 라벨링은 주류에도 적용된다. 결과 보고서 E36066에는 와인의 알레르기 항원을 라벨링 시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적합한 언어의 목록이 적혀 있다. 알레르기 항원 라벨링 규칙 시행에 관한 지침은 위원회 웹사이트 http://ec.europa.eu/food/food/labellingnutrition/foodlabelling/guidelines_6_10.pdf를 참조하면 되고, 이 지침에는 예외로 허용하는 특정 경우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다. 성분 리스트가 필요하지 않는 음식, 특정 혼합 성분의 하위 성분, 적정하게 정의된 범주에 속하는 성분과 성분으로 간주되지 않는 물질 위원회 지시 사항 2007/68/EC은 알레르기 항원 라벨링 의무에서 영구적으로 면제된 성분 및 재료의 목록을 정하고 있다(더 자세한 내용은 결과 보고서 E47105를 참조)

특정 성분은 명칭이 아닌 카테고리 명칭으로 지정되어 있다(지시 사항 2000/13/EC의 별지 I). 여기에는 지방, 유지(땅콩 유지도 새로운 알레르기 항원 규칙에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할 것), 녹말, 생선, 치즈, 향신료, 허브, 견베이스, 빵가루, 설탕, 포도당, 글루코스 시럽, 유단백질, 코코아 버터, 설탕 절임 과일, 야채와 와인이 포함되며 지시 사항 2001/101/EC는 육류를 카테고리 명칭으로 추가하고 있는데 라벨링에 있어 "육류" 라는 용어는 미리 포장 판매된 육류 제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더 자세한 내용은 결과 보고서 E23004를 참조)

- 특정 성분의 양이나 성분의 카테고리(QUID) - 아래 참조
- 미터 계량 단위(리터, 센티리터, 밀리리터, 킬로그램 또는 그램)로 표시되는 사전에 포장된 식품의 실중량
- 유효 일자 : 유통기간은 "유효 기간" 이나 "유효 만료 기간"이라는 문구로 날짜를 포함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유효 일자는 일 - 월 - 년 의 순서로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유효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식품의 경우, 날짜와 만료하는 월 표시만 명기해도 유효하며, 유효 기간이 3개월에서 18개월인

EU 농식품 관련 제도

경우 월, 연도만 표시해도 충분하고, 18개월 이상인 식품은 연도만 표시해도 충분하다. 부패하기 쉬운 식품의 경우 날짜, 월을 표시하되, 가능하면 연도로 구성된 일자 뒤에 "유효일" 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야 한다.

- 특별한 저장 조건이나 사용 조건
 - 사업체 명과 제조업체의 주소, 지역사회 내 포장업체나 판매처
 - 해당정보가 없어 소비자가 오해하는 경우를 대비한 원산지나 출처에 관한 세부 사항
 - 사용 설명서
 - 1~2% 이상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의 경우 실제 알코올 강도
 - 생산업체, 제조업체나 포장업체, 또는 유럽연합 내 첫 번째 판매업체가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품이 속하는 로트를 확인하기 위한 표시로 이 표시는 라벨의 다른 표시와 분명하게 구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글자 "L"로 시작되어야 한다. 최소 유통기간 일자(일자 및 달)나 "유효일" 날짜가 라벨에 암호화되지 않은 형태로 표시된 경우 로트 식별은 필요하지 않다.
 - 방사선 처리를 거친 식품, 냉동식품에 대한 표시 및 처리 가공 공정(7장 참조)
- 주 : 유럽연합법은 EAN(European Article Numbering) 제품코드화 시스템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지 않는다. 다만, EAN은 2005년 1월 1일에 의무화된 추적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유럽연합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바코드 시스템이다(결과 35112 참조).

첨가제

- 라벨링 지시 사항의 별지 II에는 첨가제 카테고리의 목록이 적혀 있는데, 특정 이름이나 EEC 번호 뒤에 첨가제의 카테고리 명이 표시되어야 하는데, 표시해야 하는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색상, 방부제, 항산화제, 유화제, 농축제, 응집제, 안정제, 화학 조미료, 산, 산조절제, 응고 방지제, 변성 전분, 감미료, 소포제, 발윤제, 유화 소금, 밀가루 처리제, 경화제, 습윤제, 수분 조절제, 추진제 가스
- 조미료 : 라벨링 지시 사항의 별지 III 에는 성분 리스트에서 조미료를 지정하는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 감미료/아스파르테임/폴리올 및 감초가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표준 문구가 라벨에 있어야 하며, 포장 충전 가스는 첨가제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표준 문구가 필요하다.(위원회 지시 사항 2008/5/EC)

키니네와 카페인

위원회 지시사항, 2002/67/EC는 식품(보통 토닉 음료와 에너지 음료)을 제조하거나, 준비할 때 사용되는 키니네와 카페인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키니네와 카페인은 "향신료"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에 성분 리스트에서 반드시 언급하여야 하는데, 리터 당 150 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 음료는 "고농축 카페인"이라는 라벨과 함께 mg/100ml로 카페인의 양을 표시해야 한다.

피토스테롤과 피토스테놀

위원회 규제 608/2004 는 피토스테롤, 피토스테롤 에스테르, 피토스테놀, 피토스테놀 에스테르(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 사용됨)가 추가된

식품 및 식품 성분에 대한 라벨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라벨링에서는 "식물성 스테롤", "식물성 스테롤 에스테르", "식물성 스타놀", "식물성 스타놀 에스테르"로 각각 표시되어야 한다.

정량적 성분 표시(QUID)

정량적 성분 표시(QUID)는 다음의 경우에는 필수이다.

- 성분이나 성분의 카테고리가 식품명 아래 표시되는 경우

예를 들어, 딸기 아이스크림의 "딸기 15%"(딸기의 QUID), 과일 파이의 "과일 35%"(총 과일의 QUID)로 표시해야 한다.

- 성분이나 성분의 카테고리가 소비자가 생각하는 명칭과 연관되는 경우 :
예를 들어 쇠고기 스프에서는 쇠고기의 QUID

- 성분이나 성분의 카테고리가 라벨에서 단어로 강조되는 경우(예를 들어 "버터로 만들어짐"), 그림(우유 성분을 강조하기 위한 소의 그림) 또는 그래픽(다양한 크기와 색상, 프린트 스타일로 표시됨)

- 성분이나 성분의 카테고리가 식품의 성격을 표시하거나, 유사 제품과 구분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우

성분 리스트가 라벨에 표시된 경우 - 이 때 중량은 리스트에 표시할 수 있음
- 를 제외하고 제품명 다음에 QUID를 바로 표시하여야 하는데 백분율로 표시되는 성분의 중량은 제품을 제조할 때 실제로 사용된 성분의 중량과 일치해야 한다.

QUID 요건은 커피의 카페인, 과일 주스의 비타민과 미네랄처럼 식품에 원래 내재해 있어 첨가물이 아닌 성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제품에 건조 실중량이 명기되거나 성분이 향신료로 사용된 경우 등, QUID를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다수 있다. QUID는 영양 성분 라벨링을 대체할 수 없다.

위원회 Directive 1999/10/EC에는 다음과 같이 QUID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 "감미료 추가"나 "설탕, 감미료 추가"가 식품명 아래에 표시된 경우
- 비타민과 미네랄의 추가가 영양 성분 라벨링에 표시되는 경우
- 농축 식품이나 건조식품인 경우

회원국과 업계 조직에서 QUID 원칙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일반적인 지침을 마련하였다. 유럽위원회 웹사이트 http://ec.europa.eu/food/fs/fl/fl02_en.pdf 에서 이 지침의 사본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언어 요건

일반적으로 라벨링은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재되어야 한다. 이는 회원국의 공식 언어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인 규칙의 예외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 다른 언어 사용 가능
- 내용물을 묘사하는 언어 이외의 방법 (예시 : 그림)

유럽연합 전체에서 다양한 언어로 된 라벨링이 허용되고 있다.
실제로 사용되는 언어 라벨링의 요건 :

EU 농식품 관련 제도

오스트리아	불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권장
벨기에	불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권장
불가리아	불가리아어
체코 공화국	체코어
덴마크	덴마크어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어
핀란드	핀란드어
프랑스	불어
독일	독일어
그리스	그리스어
헝가리	헝가리어
아일랜드	영국 영어
이탈리아	이탈리아어
라트비아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어
룩셈부르크	불어 또는 독일어
말타	말타어, 영어 또는 이탈리아어
네덜란드	네덜란드어
폴란드	폴란드어
포르투갈	포르투갈어루마니아어
루마니아	루마니아어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어
스페인	스페인어
스웨덴	스웨덴어
영국	영국 영어

접착식 라벨

유럽연합의 범규에는 접착식 라벨 사용에 관한 언급이 없다. 접착식 라벨을 수용할지 여부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샘플

유럽연합 법규는 모든 소비자용 식품에 적용되는데, 샘플에 대한 특정 라벨링 요건이나 예외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는 수출업체는 다음의 주소에 있는 회원국의 FAIRS 보고서를 참조하면 된다. (<http://useu.usmission.gov/agri/fairs.html>).

유전자 변형 식품 및 신규 식품의 라벨링

본 보고서의 7.A 장은 유럽연합 내 유전자 변형 식품의 규정에 관한 검토와 상업화를 다루고 있으며, 유전자 변형 식품과 변형 식품을 이용한 식품에 대한 유럽 연합의 라벨링 요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유전자 변형 식품을 이용하여 제조"나 "유전자 변형"이라는 단어는 성분명 다음에 보충 설명이나 세목으로 명기되어 유전자 변형 콩, 유전자 변형 옥수수 단백질이 있는지 여부와 시장에서 현재, 유통되는 유전자 변형 첨가제와 향신료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B. 의료/건강/영양학적 표시

<http://useu.usmission.gov/agri/claims.html>

2007년 7월 1일, 영양과 보건 관련 문구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발효되었는데, 규정 1924/2006은 유럽연합 전역에서 "저지방"이나 "비타민 C 다량 함유"와 같은 영양학적 문구나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효과적임" 등과 같은 건강 관련 문구를 사용하는 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규정은 유럽연합 시장에서 판매되는 식품이나 음료에 모두 적용되는데 특정한 영양학적 프로필(염분과 설탕, 지방이 특정 수준 이하일 때)에 적합한 음식만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유럽연합에서 명문화된 리스트에 포함되는 식품 라벨에만 영양 및 건강 관련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데 해당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식품은 영양학적 라벨링 규정 90/496/EC의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영양 프로필은 유럽식품안전기구(EFSA)의 과학적 평가를 기반으로 2009년 1월에 개발될 예정인데, 영양 프로필이 정해진 후 식품업체가 이 새로운 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게 되며, 영양분(설탕, 소금, 지방) 중 하나가 프로필에 맞지 않아도 초과하는 영양분을 라벨에 명기하는 경우 해당 영양학적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지방 요구르트에 설탕이 많은 경우, 라벨에 "설탕 다량 함유"라고 명기하기만 하면, 저지방 요구르트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건강 관련 문구는 한 가지라도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유럽시장에서 판매되는 새로운 제품은 규정 1924/2006의 별지에 상세하게 명기된 영양학적 문구를 사용하는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2007년 1월 이전에 라벨이 만들어졌거나 출시된 상품은 2010년까지 구 라벨을 사용하여 시판할 수 있으며, 2010년부터는 별지에 포함된 영양학적 문구만 사용할 수 있다.

"뼈에 좋은 칼슘"과 같이 잘 알려진 건강 관련 문구는 각 국가에서 이미 승인되어 사용되는 회원국의 건강 관련 문구를 토대로 하여 2010년 1월까지 정립될 예정이다. 3년간의 유예 기간이면, 식품업체들이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질병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문구는 유럽연합에서 이전에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문구에 대한 유예 기간은 없다. 질병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문구와 어린이의 건강과 성장을 돕는다는 문구는 과학적인 서류를 EFSA에 제출한 후 사안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새로운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건강 관련 문구는 EFSA에 제출해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승인을 위한 간소화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결과 보고서 E48055는 건강 관련 문구를 승인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EFSA의 웹사이트 <http://www.efsa.europa.eu>

/EFSA/efsa_locale-1178620753812_1178623592471.htm에서 식품업체가 건강 관련 문구를 승인 받기 위해 출원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새로운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건강 및 영양학적 장점이 있음을 암시하는 등록상표와 브랜드명은 15년 이내에 유럽 시장에서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

영양학적 라벨링에 관한 요건

영양관련 문구가 라벨이나 광고 메시지에 적히지 않는 한 영양 관련 라벨링은 유럽연합에서 의무 기재 사항이 아니다. "영양 라벨링"은 라벨에 적힌 칼로리와 일정 이상의 분량이 들어 있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섬유소, 나트륨, 비타민, 미네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영양 관련 라벨링 규칙은 평의회 규정 90/496/EEC에 규정되어 있다.

영양관련 라벨링을 표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그룹 1 또는 그룹 2와 같이 정보를 구성해야 한다.

그룹 1	그룹 2
- 칼로리	- 칼로리
-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양	- 단백질, 탄수화물, 설탕, 지방, 포화 지방산, 섬유소 및 나트륨의 양

설탕, 포화 지방산, 섬유소, 나트륨에 대한 영양 관련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그룹 2의 정보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칼로리와 영양소 함유량은 100 그램이나 100 밀리리터 당 얼마가 함유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비타민과 미네랄에 관한 정보는 일일 권장량(RDA)의 몇 퍼센트에 달하는지 표시하여야 한다.

라 벨

않은 경우 일렬로 배열하여 구매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시한다.

C. 제품별 라벨링

몇몇 제품의 경우, 위에서 기술된 일반적인 요건 이외의 구체적인 라벨링 요건이 제정되어 있으며, 새로 제정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유전자 변형 식품
- 신규 식품
- 강화 식품
- 식이 요법, 영아/유아 식품을 포함하여 특별한 목적을 가진 식품 - 쇠고기
- 와인
- 스피릿 드링크
- 유기농 식품
- 코코아와 초콜릿 제품, 설탕, 꿀, 과일 주스 및 유사 제품, 분유
- 커피 추출물과 치커리 추출물, 과일 잼, 젤리, 마멀레이드, 밤 푸레
- 신선한 과일과 야채
- 고기, 가금류, 달걀, 유제품, 버터
- 해산물

위 제품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본 자료집 제7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2008년 1월 30일부로 유럽은 유럽 연합의 일반적인 식품 라벨링 요건에 관한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새 요건에는 미리 포장된 식품의 경우 전면 라벨에 영양 성분 관련 정보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의무 정보 기재 시 글자 크기는 3mm 이상으로 하며, 알코올 함유 음료에는 성분리스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라벨링 제안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결과 보고서 E48020을 참조하면 된다.

제3장 포장 및 용기 요건

<http://useu.usmission.gov/agri/packaging.html>

A. 상자 크기

실제 함량과 라벨에 표시된 중량 사이에 허용되는 최대 오차와 이 오차를 확인하는 방법이 개정된 평의회 규정 76/211/EEC에 정해져 있다. 라벨에 3mm 이상 크기로 표시된 소문자 "e"는 실제 함량이 표시된 중량과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량을 표시하는 숫자의 크기는 표시된 중량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 표시 중량이 1000g 이나 100cl 이상인 경우 최소 6mm 높이
- 200g/20cl 보다는 크나 1000g/100cl 보다는 적은 경우 최소 4mm
- 50g/5cl 보다는 크나 200g/20cl 보다는 적은 경우 최소 3mm
- 50g/2cl 보다 적은 경우 2mm. 중량은 계측 단위와 함께 표시되어야 함

새로 제정된 지시 사항 2007/45/EC에서는 유럽연합 및 개별 국가의 의무적인 포장 크기에 대한 규정이 폐지되었다. 해당 지시 사항에 의거하여 와인과 스피릿 음료, 커피, 백설탕을 제외한 모든 제품이 자유로운 규격으로 포장될 수 있으며, 우유, 버터, 건조 파스타, 커피에 대해 의무적으로 중량을 표시하고 있는 회원국은 2012년까지 제한 규칙을 유지할 있다. 백설탕 관련 규정은 2013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와인과 스피릿 음료에 관한 의무 중량 표시는 지시 사항 2007/45/EC의 별지에 명기되어 있다.

B. 포장지 폐기물 관리

회원국은 포장지 폐기물을 축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포장지의 재사용, 재생, 재활용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평의회 지시 사항 94/62/EC)

재활용을 포함한 수집, 재사용, 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 포장 확인 시스템을 만들었다. (위원회 결정 97/129/EC) 시스템 사용 여부는 임의로 결정할 수 있으며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잘 알려진 재활용 프로그램으로는 독일의 "그린 도트(green dot)" 시스템이 있다. 유럽의 포장지 재생 조직 웹사이트에서 유럽의 그린 도트 시스템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www.pro-e.org)

C. 식품접촉 물질의 재질

유럽 의회 및 평의회 규정 1935/2004는 유효하고 지능적인 포장을 포함, 식품을 포장하고 있는 재질에 대한 주요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6일에 발효된 것으로 규정 80/590/EEC 및 89/109/EEC을 대체하는 규정이다. 또한, 라벨링 및 추적 가능성에 관한 요건과 유럽 식품 안전 기구를 통한 재료(substance) 승인 절차가 설명되어 있다. 특정 조치에서 추가 요건이 제안될 예정이며, 승인된 재료와 재질의 리스트가 여기에 포함된다. 규정 1935/2004의 별지 I에는 특정 조치가 채택된 재질 그룹의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까지 플라스틱, 재생 셀룰로스 필름, 세라믹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사항은 마련되지 않았으며 세라믹의 경우, 세라믹의 대체물인 납과 카드뮴에 대한 허용 기준치가 확립되어 있다. 포장재에는 “식품 포장용” 이나 규정1935/2004의 별지 II에 나타나 있는 기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위원회 규정 2023/2006에는 규정 1935/2004의 별지 I에 기술된 식품을 포장하는 포장재를 생산하는 우수 생산 관행 (GMP) 관련 규칙이 나타나 있다.

이 특정 규정의 목록에 등재되지 않는 물질을 개별 회원국에서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업체는 회원국이 유럽 연합의 조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공중 보건을 위해 특정

규정을 통해 승인된 특정 포장재를 일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도 있다. 각 회원국의 법규에 대한 요약본은 유럽 위원회 웹사이트인 http://ec.europa.eu/food/food/chemicalsafety/foodcontact/sum_nat_legis_en.pdf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제 4장 식품 첨가제에 관한 규정

<http://useu.usmission.gov/agri/additive.html>

평의회 지시 사항 89/107/EEC에는 광범위한 식품 첨가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통일된 구체적인 리스트가 제시되어 있다. 이 구체적인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식품 첨가제는 회원국에서 일시적으로 2년간 승인된 신규 식품 첨가제를 제외하고 모두 금지된다. 대부분의 식품 첨가제는 특정 식품에서 제한된 수량만을 사용할 수 있다. 정량적 제한이 없는 식품 첨가제(최대 수준은 “충분량”으로 표시됨)는 우수 생산 관행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이는 원하는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처리 촉매제와 향신료는 이 지시 사항에서 취급하지 않았다.

미네랄, 미량 성분, 비타민과 같은 영양소로서 식품에 첨가된 물질은 이 지시 사항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회원국 법규에 따른다.

공인된 식품 첨가제의 목록과 사용 조건은 세 가지 지시 사항을 통해 공표되었다.

- 1) 식품에 사용되는 감미료에 대한 유럽 의회 및 평의회 지시 사항 94/35/EC 본 지시 사항에 첨부된 별지에는 선택된 식품에 사용될 수 있는 감미료의 최대량이 기재되어 있다.

2) 식품에 사용되는 색소에 대한 유럽 의회 및 평의회 지시 사항 94/36/EC

별지 I : 허용된 식용 색소 목록. 이 별지에 실린 색소만 사용될 수 있다.

별지 II : 첨가된 색소가 없는 식품

별지 III : 허용된 특정 색소만 첨가되는 식품 별지 IV: 특정 용도로만 허용되는 색소

별지 V :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색소와 그 사용 조건

3) 개정된 유럽 의회 및 평의회 지시 사항 95/2/EC

색소와 감미료를 제외한 식품 첨가제에 대한 기타 첨가제 지시 사항

별지 I : “정량” 원칙에 따라 식품에 사용이 허용된 식품 첨가제 목록(별지 II에 실린 첨가제 제외)

별지 II : 별지 I의 제한된 첨가제만 사용되는 식품 목록 코코아, 초콜릿 제품, 과일 주스와 넥타, 잼과 젤리, 분말 우유와 크림, 과일과 야채, 쌀, 식용유와 버터, 특정 치즈, 저민 고기, 빵과 파스타, 와인과 쇠고기가 이 식품에 속한다.

별지 III : 조건부로 허용된 방부제와 산화 방지제

별지 IV : 기타 허용된 첨가제

별지 V : 허용 현색제 및 현색제 용매 목록

별지 VI : 영유아를 위한 식품에 허용된 첨가제 목록

이 목록은 자사의 첨가제 웹페이지 (<http://useu.usmission.gov/agri/additive.html>)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미국 법규와 중요한 차이점은 밀가루 표백제 사용가능 여부인데, 염소, 브롬산염, 과산화수소는 유럽연합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첨가제와 향신료에 대한 라벨링 요건은 지시 사항 2001/13/EC(일반적인 라벨링 지시 사항) 및 지시 사항 89/107/EEC에 규정되어 있다.

새로운 식품첨가제를 유럽연합의 허용 품목에 추가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으로 회원국은 자국의 영토에서 2년간 새로운 식품첨가제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식품첨가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회원국에 출원하고 동시에 위원회에 출원하는 것이 좋다. 2년간의 유예기간의 승인을 얻는 절차는 회원국마다 다르며 승인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도 많이 다를 수 있다. 식품첨가제를 허용 품목에 추가하려면 유럽 식품 안전 기구(EFSA)와 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EFSA에서 첨가제를 검토한 후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려야만 위원회에서 허용 품목에 추가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처리 촉매제

식품과 식품 성분 제조에서 허용되는 추출 용매의 리스트와 사용 조건은 평의회 지시 사항 88/344/EC에 정립되어 있다.

향신료

유럽연합 내 향신료 사용에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 유럽 위원회는 다양한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승인된 모든 향신료의 리스트를 취합하였다. 일부 회원국에서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는 향신료에는 따로 표시를 하였다.

<법안>

2006년 7월, 유럽위원회는 첨가제와 향신료에 관한 현재 규정을 수정하고 식품 효소에 관한 유럽 연합의 법규를 통일시키며, 식품 첨가제, 향신료, 효소의 승인 절차를 단일화하기 위한 네 가지 법안 패키지를 상정했다. 식품 첨가제에 관한 이 법안은 현재의 지시 사항(프레임워크, 색소, 감미료, 기타)을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결과 보고서 E36113을 하면 된다. 법안은 공동 심의를 거쳐 채택되어야 한다.

제5장 살충제와 오염 물질

살충제와 오염 물질에 관한 법안은 유럽연합에 일부 통일되어 있으며, 유럽 연합과 나머지 회원국 규정은 회원국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살충제

<http://useu.usmission.gov/agri/pesticides.html>

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제품의 마케팅과 사용은 평의회 지시 사항 91/414/EEC을 통해 규정되어 있다. 이 지시 사항에는 유럽에서 허용되는 살충 성분이 정립되어 있으며, 이 지시 사항에서는 현재 사용되는 살충 성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데, 허용 품목에 포함되는 살충제만 식물 보호 제품에 사용될 수 있다. 허용 품목에 포함되는 살충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만 유럽연합에서 사용될 수 있다. 살충제 부문에서 현재 진행중인 법제화 발의안에는 사용 가능한 살충제 성분의 수가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최대 잔류물 수치(MRL)는 전 유럽에서 통일되는 중이다.

<법안>

유럽위원회는 평의회 지시 사항 91/414/EEC을 대체하는 식물 보호 제품(PPP)의 승인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정립하고자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법안의 주된 목적은 현재 승인 절차를 용이하게 하고 인간, 동물, 환경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면서 통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법안은 공동 심의를 거쳐 채택되어야 한다.

식품에 잔류하는 살충제의 MRL을 정립하는 기존 법안은 현재 과도기를 거치고 있다. 유럽의 현재 상황은 살충제에 대한 유럽연합과 각국의 MRL이 공존하는 이중 시스템이다. 그러나 2008년 9월 2일부터 모든 MRL이 유럽

연합 차원에서 통일되게 되며, 프레임워크 규정 396/2005가 전면 적용되어 현재 적용되는 지시 사항 86/362/EEC, 86/363/EEC 및 90/642/EEC를 대체하게 된다.

규정 396/2005는 공보에 별지 네 개가 처음 공표된 후 6개월 후에 완전히 적용되게 되며, 별지 I은 2006년에 공표되었다. 별지 II, III, IV는 2008년 3월초에 공표되었는데, 이는 규정 396/2005이 2008년 9월 초에 전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별지 I에는 MRL이 적용되는 상품 목록만 실려 있다.

별지 II는 유럽 연합 전역에서 통일이 이루어진 기존 MRL을 담고 있으며, 유럽 연합에서 현재 통용되는 MRL 지시 사항을 대체하게 되며, 통일된 MRL은 기본 한계치보다 더 높을 수 있다.

별지 III은 임시 MRL을 포함하고 있으며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 지시 사항 91/414 및 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에 포함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현재 통용되는 물질을 포함하여 유럽 연합 차원에서 통일되지 않은 MRL이 파트 A에 나타나 있다.
- 파트 B에는 유럽 연합 차원에서 통일된(따라서 별지 II에 포함된) 모든 물질 중 별지 I(=새로운 살충제/곡물 조합)에서 정립된 신규 상품(예를 들어 열대 제품)에 대한 임시 MRL이 포함되어 있다. 이 MRL은 규정 396/2005의 별지 II로 이동하게 된다.

별지 IV에는 MRL이 필요하지 않은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허용기준 제품에서 면제된 물질)

이 4개의 별지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물질에 대한 MRL은 유럽 연합의 기본

수치인 0.01ppm으로 결정된다(별지 V)

가공식품이나 합성식품의 살충제 MRL은 가공하지 않은 농산품 성분의 MRL에 기초하게 되며, 통일된 샘플링 법안이 잔여물의 공식 규제를 위해 개발되었다(위원회 지시 사항 2002/63/EC)

수입회원국에서 발효된 유럽연합의 법규가 없는 경우, 수출업체는 "잔류허용기준"을 확보해야 하는데, 유럽에서 이전에 사정되거나 사용된 적이 없는 활성 물질에 대해서도 잔류허용기준을 확보할 수 있다. 잔류허용기준 신청서는 "Rapporteur Member State" (RMS)로 제출하면 된다. RMS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에서 지정한다. RMS가 검토한 서류는 위원회로 발송되기 전 유럽 식품 안전 기구(EFSA)의 평가를 받게 되는데 잔류허용기준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http://www.pesticides.gov.uk/applicant_guide.asp?id=1239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잔류허용기준을 시행되게 되면, 잔류허용기준을 포함한 모든 MRL이 유럽 연합 전역에 적용되어, 통일된 유럽 연합 차원의 MRL이 부재하여 회원국에서 자국의 MRL을 지정함으로써 발생했던 모든 무역 분쟁이 사라지게 된다.

오염 물질

<http://useu.usmission.gov/agri/contaminants.html>

최대 레벨

유럽연합 전역에서 공통된 오염 물질의 최대 레벨은 위원회 규정 1881/2006의 별지에 정해져 있는데, 규정 1881/2006의 별지 I에는 식품에 함유된 질산염, 마이코톡신, 중금속, 3-MCPD, 다이옥신,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가 포함되어 있다(표 1 참조)

EU 농식품 관련 제도

위원회 결정 2007/563/EC은 미국의 아몬드를 유럽연합으로 수입하는 특별 조건을 정하고 있다. 이 결정은 껍질이 있는 아몬드, 로스트 아몬드, 아몬드를 포함하고 있는 혼합 견과나 말린 과일, 아몬드를 상당량 포함하고 있는 식품(최소 10%)에 적용된다. 공식적인 회원국 관리는 "자발적인 아플라톡신 샘플링 계획" (VASP)이 적용되는 위탁 판매 식품의 대략 5%와 VASP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위탁 식품을 대상으로 수행되는데 더 자세한 사항은 캘리포니아 아몬드 위원회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람.

표 1 : 위원회 규정 1881/2006에는 식품에 함유된 오염 물질의 최대 레벨이 정해져 있습니다.

1장 : 질산염

- 상추, 시금치, 유아용 음식에 포함된 질산염

2장 : 마이코톡신

- 견과류, 말린 과일, 시리얼, 옥수수, 향신료, 우유, 유아용 음식에 포함된 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에 관한 유럽 연합의 법규 준수를 관리하는 관할 기구를 위한 안내 문서(유럽 위원회 문서)

- 시리얼, 시리얼 제품, 건포도, 유아용 식품에 함유된 오크라톡신 A
- 사과 주스, 사과 주스 성분, 유아용 식품에 함유된 파틀린
- 시리얼, 시리얼 제품, 유아용 식품에 함유된 디옥시니발레놀
- 시리얼, 시리얼 제품, 유아용 식품에 함유된 지아라레논
- 옥수수 및 옥수수로 만들어진 식품에 함유된 후모니신
- 시리얼 및 시리얼 제품에 함유된 T- 2 및 HT - 2 독소

3장 : 중금속

- 육류, 생선, 야채, 과일, 보조 식품에 함유된 중금속 납, 카드뮴과 수은
- 캔으로 포장된 식품과 음료, 유아용 식품에 함유된 주석

4장 : 3-monochloropropane - 1,2-diol (3-MCPD)

- 야채 단백질, 간장에 함유된 3-MCPD

5장 : 다이옥신 및 유사 다이옥신인 PCB

- 육류, 생선, 생선 간 및 파생 식품, 우유, 달걀, 식용유와 버터에 함유된 다이옥신

6장 : PAH

- 식용유와 버터, 유아 식품, 육류 및 생선에 함유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PAH)

식품함유 최대 허용치에 대한 관리

표 2의 지시 사항은 샘플링 방법과 다양한 오염 물질의 레벨을 당국에서 관리할 때 필요한 분석방법에 대한 것으로 별지 I은 샘플링의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별지 II는 샘플 준비 및 분석 방법의 실행 기준에 대한 것이다.

표 2 : 당국의 관리를 위한 샘플링 및 분석 방법	
질산염	위원회 규정 1882/2006
마이코톡신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 A, Patulin and Fusarium 독소	위원회 규정 401/2006
다이옥신	위원회 규정 1883/2006
중금속, 주석, 3-MCPD 및 PAH(벤조피렌)	위원회 규정 333/2007
식품에 함유된 다이옥신과 유사 다이옥신인 PCB의 한계 수준은 식품과 사료에 함유된 다이옥신, 유사 다이옥신인 PCB를 감소시키기 위한 순환적인 접근법의 일부로 위원회 권유 2006/88/EC에서 정해진 것이다. 다이옥신과 푸란의 한계 수준은 신규 최고 수준의 약 2/3로 결정되었으며 한계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오염의 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동물과 동물 제품에 함유된 잔유물

동물과 동물 식품에 함유된 잔유물에 대한 모니터링은 평의회 지시 사항 96/23/EC에서 별도로 다루어져 있다. 이 지시 사항에는 위에서 언급된 살충제 잔유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의사가 처방한 약의 잔유물, 기타 광범위한 오염 물질 및 성장 촉진제 잔유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포함된다. 육류 제품에서 호르몬 사용을 금지시키는 조항은 평의회 지시 사항 96/22/EEC에 언급되어 있다.

<법안>

2007년 6월 4일, 유럽 위원회는 호르몬과 관계된 갑상성평형 활동(Thyrostatic action)에 관한 특정 물질과 베타 작용약을 금지하는 것에 관한 평의회 지시 사항 96/22/EC를 개정하기 위한 법안을 상정하였다. 법안은 공동 심의를 거쳐 채택되어야 한다.

제6장 기타 규정과 요건

A. 제품 검사 및 등록

회원국은 정기적으로 제품을 검사할 책임이 있으며, 위반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제품을 검사해야 한다. 수입 시점이나 마케팅 단계에서 제품을 검사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식품 및 사료 법규를 위반하면 식품과 사료에 관한 (RASFF)

위원회가 관리하는 회원국의 네트워크이다. 빠른 경보에 따른 주간 통지 보고서가 유럽 위원회의 웹사이트 (http://ec.europa.eu/food/food/rapidalert/index_en.htm)에 게재되어 있다. 웹사이트에서 공개되는 정보는 신고 국가, 신고 이유 및 발생 국가로 제한되며,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전체 유럽 연합의 영토에 적용되는 수입 유예 조치를 받거나, 제 3국 상품에 관한 특별 수입 조건을 적용받게 된다.

식품을 관리하는 연구소에 적용되는 기준은 통일되었으나, 분석을 실행할 연구소를 지정하는 것은 각 회원국의 책임이다.

동물 제품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검역 조건도 운영되고 있다(지시 사항 97/78/EC). 동물을 원료로 한 제품은 국경 검역소에서 제품을 제시해야 하며, 사전에 운송 정보를 통지한 후 수입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품을 위탁하여야 한다. 수의사의 확인을 받기로 합의된 국경 검역소의 리스트 및 수의사의 확인을 거치기로 합의된 제 3국의 동물과 동물 제품의 리스트는 웹사이트 <http://useu.usmission.gov/agri/borderposts.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선한 과일과 야채는 식물 위생 관리를 받아야 하며, 유럽 연합에서 통일한 마케팅 기준(7.J 장 참조)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제품의 샘플은 유럽연합에 적용되는 식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육류와 육류 제품의 경우 규정에서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http://useu>.

usmission.gov/agri/certification.html에서 설명된 리스팅 요건에서 권리 포기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다.

비동물성 식품에 대한 검사료는 회원국에 따라 다르다. 규정을 위반하면 식품의 반입 금지부터 강제 파기까지 다양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제품의 반입 항구를 결정할 때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규 식품을 도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럽연합 내에서 수입 식품을 등록해야 하는 요건은 없다(7.B 장 참고). 신규 식품을 도입하는 개인/회사는 식품이 판매될 회원국의 담당 기관에 요청서를 제출하고 그 요청서의 사본을 위원회의 보건 및 소비자 보호 이사회에 송부해야 한다. 유기농 식품 수입업체(7.E 장 참조)는 회원국의 관할 규제 당국에 업체의 활동을 통지해야 한다. 특정 영양 성분을 사용하는 식품을 도입할 때는(7.C장 참조) 식품을 판매하는 회원국에 통지해야 한다. 따라서 비타민 첨가 식품이나 영양 보조 식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특히 특정 회원국에 등록이나 통지 관련 요건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B. 인증 및 서류 준비 요건

http://useu.usmission.gov/agri/Certification_Guide.html

유럽연합에서 법적으로 필요한 인증서 및 미국의 인증서 발급 기관에 문의하는 방법에 대한 개요는 결과 보고서 E47088을 참조하면 된다. 이 보고서는 2007년 9월에 수정되었는데, 인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useu.usmission.gov/agri/Certification_Guide.html의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제7장 기타 특수 기준

A. 유전자 변형 식품 (GMO)

<http://useu.usmission.gov/agri/GMOs.html>

유전자 변형식품에 관한 라벨링 규정은 규정 829/2003(12-13조)에 정립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다양한 처리를 거친 제품에 적용된다. 처리 촉매제와 같이 식품의 성분이 아닌 경우 라벨링은 필요치 않으며 유전자 변형 식품이나 유전자 변형 의약품으로 치료를 받은 동물에서 비롯된 육류, 우유나 계란도 GM 라벨링이 필요치 않다.

유전자 변형식품의 공급자와 구매자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사업체는 추적성 규정에 의거 유전자 변형 식품에 관한 정보를 전송하고 보유해야 한다.

유전자 변형식품을 포함하거나 유전자 변형식품으로 제조되었거나, 유전자 변형 식품에서 생산된 재료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식품은 유전자 변형 식품을 검출할 수 있는 흔적이 없더라도 이를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 유럽연합에서 승인한 유전자 변형 식품의 우발적인 허용치는 0.9 퍼센트로 정해져 있는데 이 수치를 초과하는 모든 제품은 라벨에 이를 표시해야 한다. 유럽 연합의 위험 평가에서 허용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지 못했던, 유전자 변형 변종이 우발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허용치를 0.5 퍼센트라고 규정했던 임시 조항은 2007년 4월에 폐지되었다.

유전자 변형 식품 라벨에 쓰이는 문구는 다음과 같다.

- 식품에 성분이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 "유전자 변형"이나 "유전자 변형된 [성분 이름]을(를) 사용함"과 같은 문구를 관련 성분 바로 뒤 괄호 속에 기입해야 한다. 유전자 변형 요소를 가진 복합 성분은 "유전자 변형 [유기체 명](으)로 제조된 [성분 명] 포함"이라고 표시되어야 한다. 예:

유전자 변형 콩의 분말을 함유하고 있는 비스킷은 "유전자 변형 콩의 분말 함유"라고 표시해야 한다.

- 성분을 카테고리명으로 나타내는 경우(예를 들어 식물성 식용유), "유전자 변형 [유기체 이름 포함] 이나 "유전자 변형 [유기체 이름](으)로 제조된 [성분 명] 포함"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예: 유전자 변형 평지씨로 제조한 평지씨 식용유를 함유하고 있는 야채 식용유의 경우, "유전자 변형 평지씨에서 추출된 평지씨유 함유"라고 성분명 목록에 언급해야 한다.

이러한 표현은 성분 리스트와 같은 크기의 글자로 인쇄되는 경우 성분 리스트의 주석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성분 리스트가 없는 경우 라벨에 명료하게 표시될 수 있다.

- 성분 리스트가 없는 경우 "유전자 변형"이나 "유전자 변형 [성분 명](으)로 제조"라는 문구를 라벨링에 명료하게 표시해야 한다. 예 1: "유전자 변형 옥수수로 생산한 카라멜을 함유하고 있는 스피릿 음료". 예 2: "유전자 변형 옥수수".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2007년 연례 농업 생물공학 보고서를 참조하면 된다(결과 보고서 E47044)

B. 신규 식품

(<http://useu.usmission.gov/agri/novelfood.html>)

신규 식품 규정 258/97는 유전자 변형 식품으로 제조되었거나, 유전자 변형 식품을 포함하거나, 유전자 변형 식품으로 구성된 식품을 포함하여 신규 식품과 신규 식품의 성분을 승인하는 데 필요한 자세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1997년 5월 15일 이전까지 많은 양이 사용되지 않았던

식품과 식품 성분을 신규 식품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서는 유전자 변형 식품으로 제조되거나 유전자 변형 식품을 포함하거나 유전자 변형 식품으로 구성된 신규 식품과 신규 식품 성분의 승인 및 추적성을 다루는 별도의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유전자를 변형하지 않는 신규 식품을 시장에 판매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승인은 유럽 의회와 평의회 규정 258/97의 적용을 계속 받게 된다. 유전자를 변형하지 않은 신규 식품 범주에는 다음과 같은 식품과 성분이 포함된다.

- 의도적으로 변형된 주 분자 구조를 가진 신규 식품
- 미생물, 곰팡이균이나 조류로 구성되거나 조류에서 분리해 낸 식품
- 안전성이 검증된 전통적인 변식이나 품종 개량을 통해 얻어진 식품이나 식품 성분을 제외하고, 동식물에서 추출하거나 동식물로 구성된 식품
- 현재 사용되지 않는 제조 공정이 적용되어 해당 공정을 통해 식품이나 식품 성분의 구성이나 구조가 크게 변하는 식품

신규 식품 출원, 승인/거절/철회에 관한 전체 리스트는 http://ec.europa.eu/food/food/biotechnology/novelfood/app_list_en.pdf를 참조하면 된다.

〈법안〉

2008년 1월 14일, 유럽 위원회는 신규 식품에 관한 현재 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새로운 기법(동물 복제)과 과학 기술(나노테크놀로지)을 사용하여 제조된 식품 및 제삼국에서 안전이 입증된 식품(노니 주스 등)이 포함된다. "신규 식품 커뮤니티 리스트"에 포함된 식품만 유럽 시장에서 허용된다. 신규 식품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결과 보고서 E48014를 참조하면 된다.

C. 강화 식품

(<http://useu.usmission.gov/agri/foodsupplements.html>)

규정 1925/2006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및 허브 추출물을 식품에 추가하는 것에 대한 유럽연합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정립되어 있다. 이 규정에는 식품에 첨가될 수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목록이 게재되어 있으며, 최대, 최소 허용치를 정하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이 규정이 발효된 후 2년 동안(2009년 1월 19일까지), 위원회는 최소 및 최대 허용치를 제안해야 한다. 규정 1925/2006의 별지에 포함되지 않은 비타민과 미네랄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특정한 조건 하에서 회원국은 별지에 포함되지 않은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해 임시 허용(2014년 1월 19일까지)을 정할 수 있다. 새로운 규칙을 위반하는 식품이 2007년 7월 1일(해당 규정이 발효된 일자) 이전에 시장에 출시되거나, 라벨이 만들어진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다.

D. 식이 요법 관련 식품이나 특별한 용도를 가진 식품

(<http://useu.usmission.gov/agri/partnutr.html>)

평의회 지시 사항 89/398/EEC는 특정 영양학적 용도에 사용되는 식품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프레임워크 지시 사항이다. 해당 식품의 특별한 구성이나 제조공정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를 위한 식품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위원회 지시 사항 2001/15/EC는 특별한 영양 섭취를 위해 식품에 첨가될 수 있는 영양 물질의 각 카테고리(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에 포함되는 화학 물질들을 목록으로 제공하고 있다.

구성 요건 및 위생 요건을 포함하고 있는 조항, 원료 품질에 관한 조항, 첨가물/물질 리스트, 구체적인 라벨링 요건, 샘플링 공정과 분석 방법이 네 가지 제품 의 카테고리를 위한 지시 사항에 규정되어 있다.

EU 농식품 관련 제도

- 가공된 곡물 기반 식품 및 영아 및 유아를 위한 식품에 대한 위원회 지시 사항 2006/125/EC
- 체중 감소를 위해 에너지를 제한하는 식이 요법에 사용되는 식품에 대한 위원회 지시 사항 96/8/EC (위원회 지시 사항 2007/29/EC에 의거 개정됨).
- 조제 분유 및 성장기 분유에 대한 위원회 지시 사항 2006/141/EC
- 특별한 의학적 목적에 사용되는 식이요법 식품에 대한 위원회 지시 사항 1999/21/EC

기술 개발을 위해 위원회는 특정 규정의 요건에 위배되는 제품을 2년 동안 판매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운동선수용 식음료에 관한 특정 지시 사항이나 당뇨 환자를 위한 음식에 관한 지시 사항은 회원국 법규를 따르게 되는데 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특정 영양학적 용도의 식품을 도입할 때는 식품이 판매될 회원국에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회원국의 관할 기구 리스트는 http://ec.europa.eu/food/food/labellingnutrition/nutritional/list_auth_art9_en.pdf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 와인, 맥주 및 기타 주류

(<http://useu.usmission.gov/agri/wine.html>)

2008년 6월 6일, 와인을 위한 공동시장조직(Common Market Organization for Wine)을 개혁하는 평의회 규정 479/2008이 공표되었다. 새로운 규정의 6장에서는 2009년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와인의 라벨링 및 소개 문구에 관한 규칙이 규정되어 있다. 6장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방법은 향후 채택될 예정으로 있다. 새로운 규칙이 발효되는 시점인 2009년 8월 1일까지 평의회 규정 1493/1999에 규정된 규칙이 계속 적용된다.

2006년 3월에 미국과 유럽은 "와인 무역에 관한 미국 및 유럽 연합의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라벨링 및 인증과 같은 몇몇 문제를 다루는 첫 단계이다. 원산지 표시 등과 같은 다른 중요한 문제는 협상의 2 단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협정에서는 알코올 농도가 7%~22%인 주류를 다루고 있는데, 수입되는 모든 미국산 와인에는 협정의 별지 III(a)에 명기된 형식을 사용한 인증 및 분석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간소화된 유럽연합 수입인증서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주류, 담배 관세 및 무역국(웹사이트 http://www.ttb.gov/industry_circulars/archives/2007/2007_02.html)을 참조하면 된다. 협정의 "와인 라벨링에 관한 프로토콜"에서는 와인 라벨에 대한 선택 사항의 사용을 위한 조건을 기술한다.

결과 보고서 E36067은 와인 라벨에 필요한 필수 정보에 대한 개략적 정보를 제공하며, 임의의 정보를 제공하여 필수 정보를 보충할 수 있는 조건의 목록을 게재하고 있다. 미국 - 유럽 연합의 와인 협정에 관한 정보는 미국 재무부 - 주류, 담배 관세 및 무역국(http://www.ttb.gov/international_trade/us_ec_wine_agreement.htm)에서 관련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유럽 의회 및 평의회 규정 110/2008는 2008년 2월에 공표되어 2008년 5월 20일에 발효되었다. 이 새로운 규정에서는 스피릿 음료의 정의, 설명, 소개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이 규정되어 있다. 새로운 규정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스피릿 음료는 2009년 5월 20일까지 판매할 수 있으며, 일부 회원국에서는 맥주의 성분 표시가 의무조항이기는 하나, 유럽 연합 차원에서 이를 규제하는 법규는 없다.

10mg/리터 이상의 농축 이산화유황과 아황산염을 함유하고 있는 주류는 "아황산염 함유" 또는 "이산화 유황 함유"라고 표시해야 한다. "아황산염"을 "SO2" 또는 E220으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알레르기 항원 라벨링을 표현하도록 승인된 언어 리스트는 결과 보고서 E36066를 참조하면 된다.

F. 유기농 식품

(<http://useu.usmission.gov/agri/organic.html>)

평의회 규정 834/2007는 유기농 생산과 유기농 제품의 라벨링에 관한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규정의 Title IV는 유기농 식품의 라벨링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Title VI는 제 3국과의 무역을 다루고 있는데, 유럽연합에서 생산된 제품에는 유럽연합의 유기농 표지 사용이 의무 사항이나 제 3국에서 생산된 유기농 제품은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디자인 상의 "기술적" 문제 때문에, 유럽연합의 새로운 유기농 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2010년 7월까지 연기될 예정이며, 새로운 규정의 실행에 관한 자세한 규칙은 향후 채택될 예정이다. 규정 834/2007은 2009년 1월 1일 발효되며 평의회 규정 2092/91을 무효로 하며, 2009년 1월 1일까지는 위원회 규정 2092/91가 계속 적용된다.

유기농 식품과 관련된 기준이 유럽연합 차원에서 정해진 반면, 규정의 이행과 시행은 개별 회원국이 책임지게 된다. 유기농 제품의 수입도 회원국의 책임으로서 각국의 유기농 제품을 수입하려면, 유럽연합의 수입 업체는 지정 회원국의 정부를 통해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허가는 각 회원국이 유기농 기준과 제품 인증자가 제공한 검사방법 및 인증자의 EN 45011나 ISO Guide 65 준수 여부를 고려해 사안별로 결정하게 된다.

수입업체는 제품이 유럽 기준에 상응하는 기준에 따라 생산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추가로, 수입업체는 회원국이 인정하는 정부에 의거하여 제품 인증자가 EN 45011/ISO 65 승인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 요건에 대한 준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개별 회원국마다 다를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 미국의 유기농 인증자가 ISO 65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관할 당국으로 USDA 농업 마케팅 서비스(AMS)가 지정되었다.

규정 2092/91 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수입 승인을 사안별로 개별

회원국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평의회 규정 1991/2006에 따라 새로운 수입 제도가 채택될 때까지 이 가능성이 연장될 수 있다.

제 3국 수입품에 대한 검사 인증 관련 조항을 시행하는 세부 규칙은 위원회 규정 605/2008에 규정되어 있다. 미국 유기농 제품의 인증자는 유럽에 수출될 제품에 대해 유럽연합의 인증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인증서 원본을 제품에 첨부하여 회원국 관할 정부의 국경에서 검증받아야 한다. 위탁 화물에 대해 유효한 수입 승인이 되었는지를 관련 당국이 검증할 때까지 상품이 유통될 수 없다.

회원국이 이 규정을 시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존재하는데, 이는 회원국마다 절차가 다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법안>

현재 국가 차원의 수입 승인 시스템을 영구적인 새 수입 제도로 대체하려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새로운 시스템에는 기술적 등가 평가가 사용되어 제3국에서의 수입을 승인하고 있다. 이 법안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

G. 수직적 법규

(<http://useu.usmission.gov/agri/vertic.html>)

설탕, 코코아, 초콜렛 제품, 꿀, 과일 주스 및 유사 제품, 분유, 커피 추출물과 치커리 추출물, 과일 잼, 유사 제품에 대해 특정 상품 제조 및 마케팅에 대한 수직적 법규가 만들어져 있다.

H. 동물 제품

쇠고기 라벨링 (<http://useu.usmission.gov/agri/label>)

의무적인 쇠고기 라벨링 제도가 2000년 9월 제정되었다. 쇠고기 라벨링 제도는 2002년 1월 1일부터 전적으로 시행되었다(규정 1760/2000 및 1825/2000). 이 안에 따라 모든 쇠고기 라벨에는 다음 정보가 기재되어야 한다.

"출생지 : 제 3국의 국가명"
"사육지 : 제 3국의 국가명"
동일한 제 3국에서 출생, 사육 및 도축된 소의 쇠고기의 경우, 위 세 가지 정보를 "원산지 명"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 3국에서 도축된" 육류와 동물을 연계하는 참조 번호 및 도축장의 승인번호"
"제 3국 도축지 및 도축 공장 승인 번호"
1개 또는 1개 그룹의 동물에 도축체와 연계된 일일 최대 생산량을 나타내는 추적 코드

월령 12개월 이하 소고기에 대한 라벨링 요건은 평의회 규정 361/2008 (규정 1234/2007에 대한 개정안 - "기타 - 단일 CMO" 참조). 월령 12개월 이하 소는 두 종류로 분류 1) 8개월 이하 소 2) 월령 8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소 규정 361/2008에는 두 종류에 대한 서로 다른 판매 설명문이 담겨 있다. 위원회 규정 566/2008은 월령 12개월 이하의 소고기를 판매할 때 적용되는 자세한 규칙(라벨 및 제삼국과의 무역에 적용되는 의무적인 정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계란 표지

평의회 규정 589/2008은 계란의 판매 기준에 관한 위원회 규정 1234/2007 ("기타 - 단일 CMO" 참조)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세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식품가공 시설에서 가공할 수 있도록 껍질이 있는

계란만 유럽연합에 수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계란은 유럽연합 기준에 의하면 "B 등급" 계란으로 분류된다. 규정 589/2008의 30조에 대한 유럽연합의 해석에 따르면, 가공용 계란을 포함해 제 3국에서 수입한 계란은 ISO 3166 국가 코드에 따라 원산지 국가를 법적으로 분명하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각 계란마다 "USA"라고 적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위원회 규정 598/2008에는 표지 요건에 대한 면제 대상이 엄격한 조건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위원회 규정 617/2008은 부화용 계란 표시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 및 인식용 표시

유럽연합의 "식품위생포장"은 보건 및 식별 표시를 위한 새로운 규칙을 도입했다. 유럽 의회 및 평의회 규정 854/2004의 3장에는 신선육류에 관한 보건 표시를 적용하는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건강 표지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USDA의 식품 안전 검사 서비스의 웹사이트인 http://www.fsis.usda.gov/regulations_&_policies/European_Union_Requirements/index.asp를 참조하면 된다. 유럽 의회 및 평의회 규정 853/2004의 별지 II에는 식별 표시를 동물성 제품에 적용하는 규칙이 규정되어 있다. 필수 정보를 순차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유럽연합이 승인한 제 3국 내 시설을 통해 수입할 때만 가능하다. 유럽연합의 확인 표지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USDA의 농업 마케팅 서비스 웹사이트인 <http://www.ams.usda.gov/AMSV1.0/getfile?dDocName=STELPRDC5061042>를 참조하면 된다.

기타(우유, 유제품, 지방, 가금육, 어류 제품)

- 단일 CMO : 평의회 규정 1234/2007은 특정 일용품에 관한 다수의 규정을 대체하며, 농업 부문 시장에 대한 "단일 공통 조직"을 정립하고 있다. 2008년 7월 1일부로 우유와 유제품을 판매하는데 사용되는 호칭의 보호에

관한 위원회 규정 1898/87과 버터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평의회 규정 2991/94은 폐지되며, 평의회 규정 1234/2007에서 규정하는 조항으로 대체된다.

- 평의회 규정 543/2008은 가금육 판매 기준에 관한 위원회 규정 1234/2007(단일 CMO)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세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 특정 어류 제품에 대한 공통된 마케팅 기준을 규정하는 1996년 11월 26일 평의회 규정 2406/96

해산물과 애완동물 사료에 대한 제품 소개는 웹사이트 주소 <http://useu.usmission.gov/agri/seafood2.html> 와 <http://useu.usmission.gov/agri/petfood.html>, 를 참조하면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I. 냉동 식품

(<http://useu.usmission.gov/agri/frozen.html>)

평의회 지시 사항 89/108/EEC 에는 급속냉동식품과 그 포장 및 라벨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급속냉동식품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라벨링이 있어야 한다. "급속 냉동"임을 표시하는 문구와 상품명, 최소 유통기한, 구매자가 상품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 보관 온도 및 필요한 보관 장비, 배치 식별(batch identification) 및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마시오" 등의 유형에 대한 분명한 표시

J. 방사선에 노출된 식품

(<http://useu.usmission.gov/agri/irradiation.html>)

식품 방사선에 관한 유럽연합 규칙이 통일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유럽 전역에서 승인된 식품은 소수에 불과하다.

프레임워크 지시 사항 1999/2/EC에는 마케팅, 라벨링, 수입 및 관리 절차, 식품 방사선의 기술적 측면이 개관되어 있으며 방사선 처리된 식품은 "방사선 처리됨" 또는 "이온화 방사선으로 처리됨"이라는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이행 지시 사항 1999/3/EC는 방사선 처리가 승인된 식품 및 식품 성분에 대해 " " , 한 야채 소스" 식품 카테고리만 포함되어 있다. 허용 품목이 확장될 때까지, 자사의 웹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개별 국가 승인 품목이 계속 적용된다.

K. 과일과 야채

(<http://useu.usmission.gov/agri/Fruit-Veg.html>)

신선한 과일, 야채와 견과류는 식물 위생 관리를 받으며, 품질과 라벨링에 관한 유럽 연합의 마케팅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사를 받게 된다. 모든 신선 청과물을 선적할 때는 검역 시 수입업체가 확보하는 적합 인증서 또는 산업용 인증서가 필요하다. 청과물에 대한 마케팅 기준은 USDA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사과, 배, 살구, 아티초크, 아스파라거스, 가지, 아보카도, 콩, 싹양배추, 양배추, 당근, 콜리플라워, 샐러리, 체리, 감귤, 쿠르젯, 오이, 마늘, 키위, 파, 상추, 쉐리, 꽃상추 치커리, 멜론, 양파, 복숭아, 넥타린, 껌질 완두콩, 자두, 시금치, 딸기, 피망, 식용 포도, 토마토, 수박, 위트루프 치커리, 미니 청과, 혼합 야채과일, 호두와 헤이즐넛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다.

<법안>

과일과 야채류 마케팅 기준에 관한 유럽 연합의 규칙을 단순화하고자 하는 유럽 위원회의 법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다. 위원회는 다수의 구체적인 규칙을 기본적인 하나의 규칙으로 대체하고자 하며, 사과, 감귤, 키위, 상추, 꽃상추, 복숭아, 배, 딸기, 피망, 식용 포도, 토마토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은 현재와 같이 유지하고자 한다.

I. 해산물

(<http://useu.usmission.gov/agri/seafood2.html>)

유럽연합 내의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생선과 해산물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어종의 상업적 명칭(각 회원국은 상업적 표현 리스트를 정립하였음).

제품화된 방법: "어획...", "담수에서 어획", "양식".

어획 장소 : 바다에서 어획된 제품의 경우, 별지에 기록된 지역 중 하나를 언급. 담수에서 어획된 제품의 경우, 원산 국가에 대한 언급. 양식 제품의 경우, 제품이 최종 단계에 이른 국가를 언급. 운영업체는 어획 장소를 좀 더 자세히 표현할 수 있다. 모든 마케팅 단계 - 선박에서 매장까지- 에서 추적성과 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생선과 해산물의 상업적 명칭에 관한 정보, 생산 방법, 어획 장소를 라벨이나 포장에 표시하거나 제품에 첨부된 상업 서류(예를 들어 송장)에 표기해야 한다.

해산물을 유럽 연합에 수출하는 것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해산물을 유럽 연합에 수출하는 방법"에 관한 2008년 수정된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다음의 주소 <http://useu.usmission.gov/agri/How%20to%20export%20seafood2008.pdf> 에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제8장 저작권 및 상표법

상표

유럽연합의 상표 관련 정책은 평의회 규정 40/94에서 제정되어 위원회 규정 2868/95를 통해 시행되었는데 이 규정을 통해 전체 유럽연합 영토를 포괄하는 통일된 단일등록시스템이 성립되었다.

실제로 유럽연합의 상표는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그림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기호형태이어야 하며, 다른 회사의 상품 및 서비스와 구분되는 상표여야 한다.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유럽연합 상표 등은 스페인 Alicante에 위치한 내수 시장용 통일사무국에 출원하여 위원회 규정 2869/95에 명기된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각 회원국의 특허청에 출원할 수 있다.

등록 절차를 완료하면, 상표는 상표登記부에 등록되게 된다.

유럽연합의 상표는 여전히 필요성이 존재하는 기존 회원국의 상표법을 대체하지 않고 공존하고 있으며, 평의회 지시 사항 89/104/EEC는 등록 가능/불가능한 상표, 상표권의 독점성 및 상표권을 박탈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대한 지시 사항이다.

지리적 표시의 보호

(<http://useu.usmission.gov/agri/GI.html>)

지리적 표시(GI)는 "품질, 명성 또는 상품의 특징이 원산지에 기인하는지를 확인하는 표시"이다. 등록된 유럽 농산품과 식품의 지리적 표시/원산지 표시에 대한 평의회 규정 510/2006 은 규정 2081/92를 폐지시키고 규칙이

WTO 결정에 부합되도록 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제 3국의 업체는 정부를 통하지 않고도 위원회에 직접 등록을 출원할 수 있으며, 호혜주의 요건이 삭제된다. 또한 제 3국이 신규 등록에 대해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어있다. 제 3국 생산업체가 GI를 등록하는 것에 대한 지침은 위원회 웹사이트 http://ec.europa.eu/agriculture/foodqual/protec/thirdcountries/proced_en.pdf에 공표되어 있다. 유럽 연합에서 등록되어 보호받는 상품명의 리스트는 http://ec.europa.eu/agriculture/qual/en/1bbaa_en.htm를 참조하면 된다.

제9장 수입 절차

평의회 규정 2913/92에는 유럽 연합의 관세 코드가 정립되어 있다. 위원회 규정 2454/93는 이 코드의 시행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코드에는 제 3국과 무역할 때 적용되는 모든 관세 절차가 기록되어 있다. 수입 관세는 상품의 관세율 등급과 관세 가치에 의거 결정되는데 코드가 시행되면 유럽연합 이외의 지역에서 수입된 상품에 대해 동일한 관세를 적용하게 되는 유럽연합 관세 동맹이 결성된다. 어떤 수입 제품이 한 회원국에서 통관하게 되면, 유럽연합의 전체 국가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유럽 연합은 상품의 관세를 분류할 때 통합 분류집(CN)을 사용하는데 통합 분류집의 여덟 자리 코드 번호는 통일 시스템(HS) 분류집에 기초해 작성되었다. 첫 여섯 자리는 HS 표제를 나타내며, 그 다음 두 자리는 CN의 작은 표제를 나타낸다. 일용품 코드 및 관련 수입 관세는 유럽 연합의 온라인 관세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면 된다.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tarhome_en.htm)

회원국의 관세 당국에서 적용하는 관세 정보(BTI)를 얻어 제품을 적절하게

분류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무역업체는 수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관세 등급을 미리 알 수 있으며, BTI는 모든 회원국에서 적용받게 된다. BTI를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는 유럽 위원회의 과세 및 관세청 웹사이트인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customs/customs_duties/tariff_aspects/classification_goods/index_en.htm에서 활용할 수 있다. 관세 당국의 리스트 주소는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common/links/customs/index_en.htm이다. 상품의 관세는 유럽 국경에서 청구서에 기재된 제품 가격에 부과되는 금액으로 항공료나 선적료와 같은 물류비도 반영된다.

수입 관세와 기타 세금을 납부한 상품만 유통이 가능하며, 유럽연합에 수입된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다음과 같다.

- 수입 관세(단위 중량/부피/수량에 따른 종가 관세나 특정 관세로 표현됨)
- 밀가루와 설탕에 대한 추가 관세(가공품)
- 진입세(과일과 야채)
- 환경세 : 통일되지 않음
- 검사 수수료 : 통일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VAT) : 통일되지 않음
- 소비세(주류와 담배) : 통일되지 않음

서로 다른 회원국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리스트는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taxation/vat/consumers/vat_rates/index_en.htm를 참조하면 된다.

주류와 담배에 적용되는 소비세는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taxation/excise_duties/alcoholic_beverages/rates/index_en.htm 및 http://ec.europa.eu/comm/taxation_customs/taxation/excise_duties/tobacco_products/rates/index_en.htm를 각각 참조하면 된다.

규정에 자세하게 설명된 기타 관세 절차에는 수입 관세가 면제되는 자유

EU 농식품 관련 제도

무역 지역으로의 진입 등에 대해 설명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가공을 위해 상품을 반입하되 완제품을 반드시 수출해야 하는 보세 가공 제도 등이 그것이다. 또한, 규정에는 결정이 내려지거나 시행되는 회원국에서 두 단계를 통해 항소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 항소는 관세 당국에, 그 다음은 해당 국가 법원에 항소하는 방법이 있다.

<법안>

"현대 관세 코드"(MCCC) 시행에 관한 규칙을 정립하는 법안이 2009년 초에 완결되어 채택될 예정이다. MCCC는 "중앙집권화된 통관" 개념을 추진하고 "창구 단일화"와 "원스톱 샵" 개발을 통해 기존 법규를 단순화하고자 한다.

부 록

1. 법규 관련 유관기관 연락처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Rue de la Loi 200 1049 Brussels, Belgium
Tel : (32-2) 299 11 11

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
Avenida de Aguilera, 20 03080 Alicante, Spain
Tel : (34-96) 513 92 43
Fax : (34-96) 513 91 73

European Union - Delegation of the European Commission to the United States
2300 M Street NW, Washington, DC 20037, USA
Tel : (202) 862-9500
Fax : (202) 429-1766

United States Mission to the European Union
Office of Agricultural Affairs
Organization chart : <http://useu.usmission.gov/agri/staff.html>
Mailing address : 27 Boulevard du Regent 1000 Brussels, Belgium
Tel : (32-2)508-2760
Fax : (32) (2) 511-0918
e-mail : AgUSEUBrussels@fas.usda.gov

Other FAS Offices in the European Union
<http://useu.usmission.gov/agri/FAS-in-EU-27.html>

USDA/FDA contacts for certification of animal products
<http://useu.usmission.gov/agri/certification.html>

USDA/FDA contacts for U.S. export requirements and documentation
http://www.fas.usda.gov/agx/ship_doc_req/food_ag_us_req.asp

2. 제반 법규 확인

<http://useu.usmission.gov/agri/legis.html>

공식 기관지

<http://europa.eu.int/eur-lex/lex/JOIndex.do?ihmlang=en>

EU의 공식 기관지는 미국의 연방 등록사항과 동등함.

EU 공식 기관지의 L(법규정)과 C(정보 및 공지사항)들은 EU 회원국들의 공식 언어로 제작·배포되어진다.

법규정의 발효

<http://eur-lex.europa.eu/en/legis/index.htm>

제반 내용들은 목차의 20가지 소제목에 따라 기재되어 있다.

농업, 바이오기술, 유기농업, 식료품 등과 관계되는 제반 법규들은 3장 “농업” 과 15장 “환경, 소비자 및 건강보호”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본 인터넷사이트에서는 대표적인 법규정들과 기관지에 실려있는 수정안들이 모두 안내되어 있다. 본 사이트에서는 정리된 규정 원문 - 법률적 가치는 없지만 기초적인 제반 규정 비준서 혹은 이와 유사한 개정안 등 - 들이 명료하게 정리되어 게시되어 있다.

3. EU 발의안

본 자료는 현재 발효중인 EU 식품법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아래는 미국의 대EU 수출에 영향을 미칠만한 EU 제안 및 발의안이다.

- 아크릴아미드(플라스틱 및 접착제 원료), 마약류, 동물복지표기, 효소, 식품접촉 포장재, 기능성 건강식품, 지리적 표시제, 진귀한 음식, 영양표시, 유기농식품, 살충제, 애완동물 사료, 라벨 표기사례, 감미료

4. 웹 사이트 및 안내문

EUROPEAN COMMISSION :

- DG Health & Consumers : http://ec.europa.eu/dgs/health_consumer/index_en.htm
- DG Agriculture : http://ec.europa.eu/agriculture/index_en.htm
- DG Taxation & Customs Union :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index_en.htm

EU Decision-Making Procedures :

- http://eur-lex.europa.eu/en/droit_communaire/droit_communaire.htm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 :

- http://www.efsa.europa.eu/EFSA/efsa_locale-1178620753812_home.htm

U.S. Mission to the EU :

-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 <http://useu.usmission.gov/agri/usda.html>
- Foreign Commercial Service : <http://www.buyusa.gov/europeanunion/>

FAIRS Reports :

- <http://useu.usmission.gov/agri/fairs.html>

GUIDANCE DOCUMENTS :

- EU general food law – implementation guidelines :
http://ec.europa.eu/food/food/foodlaw/guidance/guidance_rev_7_en.pdf
- How to read a food label :
http://ec.europa.eu/food/food/labellingnutrition/foodlabelling/publications/leaflet_EN6_12112007_web.pdf
- Food traceability factsheet :
http://ec.europa.eu/food/food/foodlaw/traceability/factsheet_trace_2007_en.pdf

EU 농식품 관련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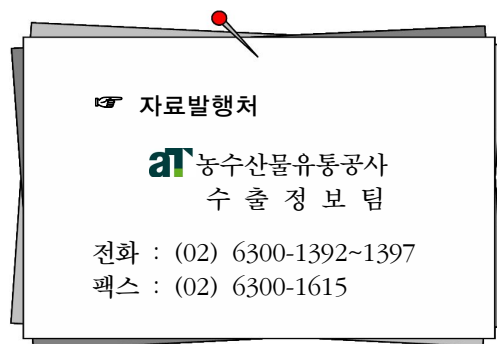
- Pesticide residues :
http://ec.europa.eu/food/plant/protection/resources/publications_en.htm
- EU rules on wood packaging material :
http://ec.europa.eu/food/plant/organisms/imports/overview_eu_rules.pdf
- Food contact materials - a practical guide :
http://ec.europa.eu/food/food/chemicalsafety/foodcontact/practical_guide_en.pdf
- Questions and answers on the regulation of GMOs in the EU :
http://ec.europa.eu/food/food/biotechnology/gmfood/qanda_en.pdf
- GM guidelines for the European Food & Drink Industries :
<http://www.ciaa.eu/documents/brochures/GM%20guidelines.pdf>
- EFSA guidance document on health claims :
http://www.efsa.europa.eu/EFSA/KeyTopics/efsa_locale-1178620753812_NutritionAndHealthClaims.htm
- Vitamins & minerals – guidance on submissions for safety evaluations :
http://ec.europa.eu/food/food/labellingnutrition/nutritional/administration_safety_substances_en.pdf

<참고>

본 자료집은 USDA/외국 농업 서비스 농무관, 미국 식품 및 농산물 수출업자가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 연합에 파견한 사절단이 작성한 것이다. 최대한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으나 작성 후 관련 정책이 변경되었거나 명확하고 일관된 정보를 입수할 수 없어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수출업체는 상품을 선적하기 전 관련 국가 기관에 수입 요건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각국의 고객에게 수입 요건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품의 최종 승인은 상품이 통관할 때 검역관이 해석하는 수입 국가의 규정과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유럽 연합 회원국의 특정 요건에 관한 정보는 개별 EU 회원국별 작성한 FAIRS 보고서를 참조

<http://useu.usmission.gov/agri/fairsh.html>



본 자료집은 미국 농무부산하의 해외농업국에서 발간한 「EU-27 FAIRS Country Report Annual European Union Report 2008」 을 인용하여 작성한 것임.